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27日(金) 午後1時

場所 運營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崔相燮議員外
1人發議) ... 1面

(13時 50分 開議)

○委員長 金寅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定期會 第5次 運營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第4次 運營委員會에서도 잠시 論議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事
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의 件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오늘 會
議를 召集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
의 件은 事務局에서 가장 중요한 懸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오늘 上程된 事務局設置條例改正案은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1.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崔相燮議員外
1人發議)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發議者를 대표해서 崔相嬭 委員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相嬭 委員; 崔相嬭 委員입니다.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提案背景은 現行 서울市議會事務局
設置條例에는 專門委員의 구체적인 業務分掌과 服務規定이
없이 第3條第2項에 「委員會의 議案을 審査하고 議事進行을
보좌하기 위하여 專門委員을 둔다」 라고 포괄적으로 規定되
어 있어 議案擔當官과의 業務重複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
로 마찰이 빈번하고 業務遂行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고, 常任
委員會 中心의 議政活動 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專
門委員에게 委員會 業務를 보좌할 職員이 配定되어 있지 않
아 會期 中에는 물론 非會期 中에도 業務遂行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여 專門委員의 固有業務 확정과 그에 따른 人力 등
諸般措置가 시급한 실정이던 중 각 의견을 수합, 조정하여 提
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常任委員會 中心의 議政活動을 능동적이고 효
율적으로 보좌토록 하기 위하여 專門委員의 職務를 명기하고
委員會의 원활한 運營과 專門委員의 業務를 보좌하고 議事進
行 支援 및 一般行政處理 등을 위하여 專門委員 傘下에 필요
한 公務員을 두도록 하며 專門委員과 議案擔當官의 중복된
업무를 調整 役割分擔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번 第

156회 定期會에서 地方自治法이 일부 改正됨에 따라 事務局의 設置條例中 關聯規定의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第8條에 專門委員의 分掌事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第7條의 議案擔當官의 분장사항 중 일부를 削除 또는 新設하여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委員會의 所屬 公務員 7급 11名과 事務補助員 10名을 增員하였고 기타 編輯要員 4名, 速記要員 5名, 地方機械員 1名 등 總31名이 增員되었고 事務局은 事務處로 事務局長은 事務處長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게 그 主要骨子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背景, 提案理由,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히 言及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檢討意見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專門委員의 職務가 명기되어 議案擔當官과의 業務分掌의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화 되어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하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事案에 따라서는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 또는 책임 회피의 소지는 있다고 보며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번 事務局設置條例의 改正으로 상임위별 專門委員 傘下에 職員 1名과 事務補助員 1名이 충원되도록 되어 있어 專門委員의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과

다한 업무량을 감안, 최소한의 적정한 人員이 增員되어야 委員會活動 보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國會의 專門委員과 市議會 專門委員은 責任의 比重과 業務量 등의 면에서 水平的, 平面的 比較가 어려우나 國會 專門委員室에는 최소 10名에서 20名 수준의 人員이 配置되어 있습니다.

셋째, 地方自治法 第64條第1項 및 同法 施行令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배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輯, 速記要員의 絶對不足으로 시의 적절한 會議錄 發刊, 配布에 차질을 빚어온 형편이었으나 금번에 編輯要員 4名, 速記要員 5名이 增員되어 다행이며, 향후에도 업무량을 감안 적절한 人員 配定 또는 用役 活用 등을 통해 會議錄 配布의 迅速 正確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地方自治法 改正案이 12月 17日 國會 本會議를 통과되어 政府에서의 公布 節次만 남아 있는 상태로 事務局設置 條例中 關聯條項의 條文整理는 일응 시기상조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나 條文整理의 대상이 되는 關聯規定은 爭點事項이 없고 上位法の 改正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條例의 公布時期를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實務協議를 거쳤던 事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整理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 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寅東; 委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散會)

○出席委員

金寅東 金炯奎 孫允準 朴善童

崔相嫻 孟今龍 廉東秀 曹相彩

○專門委員

梁在大